등록번호	항공검사과-144
등록일자	2021. 01. 27
결재일자	2021. 01. 27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항공검사과장	안전운항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김호진	홍덕곤	김세연	2021. 1. 27. 이상일
협조자			

	주요 검토사항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정(안) 보고	정 책 중 요 도	보통
	민원 · 갈등 가능성	낮음
	기관간 이견가능성	낮음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낮음
	서민생활 관련성	낮음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기술기준 Part21」에 따른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 중 **비행성능을 확인 시**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1.1.

안 전 운 항 국
항 공 검 사 과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정(안) 보고

□ 제정 배경

○ 「항공안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항공기기술기준(국토부 고시) 21.183(b)에 따라 항공기 감항검사(年 평균 90회)*를 실시 중

* 최근 5년간 실적 : '16년 111회, '17년 99회, '18년 90회, '19년 89회, '20년 65회

○ 항공기 감항검사 항목(서류·상태검사, 비행시험) 중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도록 한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가 없어 신규 제정*** 필요

* 그간 우리 청은 **서울지방항공청 예규를 참고**하여 항공기 감항검사를 수행

□ 주요 내용

○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 검사관은 항공기 비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형식별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도록 함

○ (**비행시험 검사절차**) 비행시험 전 기상상태, 비행경로, 탑승인원 및 주요 점검사항과, 비행시험 종료 후 수행 결과에 대하여 기장 등과 합동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함

○ (**비행시험 검사표 제·개정**)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항공기 형식에 대한 검사항목, 제작사의 비행시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함

- **비행시험 검사표***는 **지방항공청별 비행시험 표준화**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제정('08.5)된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시험 검사표**(예규)**를 준용**

* (Volume Ⅰ) 운송사업용 : A300-600 등 20개, (Volume Ⅱ) 사용사업, 자가용 : AT-502 등 49개, (Volume Ⅲ) 헬리콥터 : ANSAT-1 등 39개, (Volume Ⅳ) 활공기 : L-23 등 4개 형식 총 131개 검사표

□ 추진 계획

○ 입안(1월),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2월), 제정(안) 발령·시행(3월)

참고 1 관련 근거

□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 ② <생략>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⑤ ~ ⑨ <생략>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항공기기술기준(국토부 고시)

21.183 표준감항증명 검사 및 발급
(a) (생 략)
(b) 검사관은 감항증명 검사시 부록 E의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부록 F의 감항증명 상태검사표 및 항공기 기종별로 지방항공청장이 정한 비행시험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는 감항증명 검사기간 중 운영자가 수행한 비행시험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대체할 수 있으나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c) ~ (i) (생 략)

참고 2	신규 제정(안)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제정(안)

1. 제정이유

「항공기기술기준」 21.183(b)에서 항공기 감항검사 시 비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비행시험 검사표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항공기 검사관별 업무표준화 및 행정절차 마련을 위하여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를 제정·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검사관은 항공기 비행성능 확인을 위하여 형식별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 상태로 관리하도록 함(제4조)

나. 비행시험 전 기상상태, 비행경로, 탑승인원 및 주요 점검사항과, 비행시험 종료 후 수행 결과에 대하여 조종사와 합동 브리핑 실시 등 검사절차를 정함(제5조)

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항공기 형식에 대한 검사항목, 제작사의 비행시험 개정 사항 반영 등 매 3년 마다 비행시험 검사표를 제·개정하도록 함(제6조)

라. 비행시험 검사표는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별 비행시험 표준화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제정('08.5)된 서울지방항공청 비행시험 검사표(예규)를 준용(별권)

* (Volume Ⅰ) 운송사업용 : A300-600 등 20개, (Volume Ⅱ) 사용사업, 자가용 : AT-502 등 49개, (Volume Ⅲ) 헬리콥터: ANSAT-1 등 39개, (Volume Ⅳ) 활공기 : L-23 등 4개 형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항공기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1.183(b)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예규 제정(안) 붙임 참조